

각국의 정보원 보호현황

패트리셔 빌헬름
벨기에 저널리스트협회 이사

이 원고는 벨기에 저널리스트협회의 패트리셔 빌헬름이사가 1988년 ‘정보원의 보호’라는 제목으로 작성, 출판된 조사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변호사인 빌헬름씨의 이 조사보고서는 1986년에 실시한 조사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16개국의 정보원보호현황이 개략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정보원 보호에 대한 각국의 법률, 법원의 경향, 이에 대한 미디어측의 견해를 조사, 분석한 것이다. 이 조사는 각국 및 기자단체, 발행인, 편집인단체 등에 질문서를 보내 회답을 받고 그 위에 보충적 조사를 실시하여 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서론

정보원 보호의 문제는 정보가 크든 작든 국가의 독점이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미디어를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나라들에서 보다는 대폭적인 정보의 자유가 존재하는 나라들에서 훨씬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본 조사는 나타내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저널리스트는 정보원 비익의 권리를 인정시키려고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나, 흥미롭게도 비익권은 저널리스트의 권리로서 보다는 저널리스트의 의무라고 간주되고 있다. 저널리스트는 자유롭게 수집한 정보를 공중에게 제공할 의무의 일환으로 비익권을 정보제공이자(정보원)에 대한 의무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비밀의 정보원 비익을 보증하지 않으면 정보원은 보복을 두려워하게 되어, 끝내는 당국 이외의 정보원은 없어지고 만다.

용어의 정의

본 조사에 응한 모든 나라에서, 언론의 자유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인정되고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실행하는 수단도 보장되어야만 하고 그리고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원을 보호하는 권리가 없이는 언론의 자유는 공허한 문구가 되고 만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저널리스트에게 인정되어야 할 이른바 특권은 그들을 위한 특권은 아니다. 저널리스트의 정보원을 보호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갖는 권리는 자유롭게 정보를 받아야 하는 공중의 집단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원 비익의 「특권」은 공중의 것이며 저널리스트의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저널리스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뢰인, 즉 공중과 정보원을 위해 특권을 주장해야 한다. 이러한 뜻에서 그들의 주장은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성직자가 고백자를 위해 비익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

저널리스트의 정보원 비익의 특권은 흔히 「직업상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다른 직업 (의사, 변호사, 성직자, 공무원 등)에 적용되는 직업상의 비밀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직업상 일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해 은밀하게 지득한 모든 정보를 법원에서조차도 누설하지 않는 의무인 것이다.

저널리스트의 사명은 전혀 반대이다. 그 사명은 알고 있는 것을 공표하는 데 있다. 저널리스트가 숨기려고 하는 비밀은 지득한 정보 그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그 정보의 출처다. 즉 정보제공자가 익명을 요구할 때 저널리스트가 정보제공자의 이름이나 직업을 밝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이 정보원의 확인과 연관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저널리스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자료의 공표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태는 가령 저널리스트가 「누설」의 형태로 정보를 입수할 경우에 가끔 일어난다. 정보원을 보호하는 권리는 아직 보도하지 않은 모든 정보의 공표를 거부하는 것까지도 의미한다. 소수의 법원(미국의 일부법원)만이 이러한 태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어떠한 법률이라도 갖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보원 비익 을 약속한 저널리스트에 대해 정보원이 누구인가의 명시를 거부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 저널리스트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도, 또한 좁은 의미로도 쓰여진다. 넓은 의미로는 가끔이긴 하지만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에 기고하는 사람들도 저널리스트이다. 좁은 의미로는 「주된 직업적, 정기적 보수를 받는 일이 인쇄미디어, 라디오, TV의 1사 또는 그 이상에 말 또는 영상을 보내는 데 있으며 이를 최대의 수입원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정보원 비익의 특권을 모든 미디어의 협력이자, 그리고 가끔 협력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정해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직업적 저널리스트에게만 인정할 것인가. 어느쪽 주장에도 지지자가 있으나 여기서 논외하지 않기로 한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두고 싶은 것은 이 조사가 직업적 저널리스트의 조합과 단체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조사방법

1. 가급적 많은 정보원 보호현황을 알기 위해 우리들은 다음의 25 개국을 선정했다.
 - ▲서구=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서독,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 ▲동구=동독,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소련.
 - ▲중동=이집트, 이스라엘.
 - ▲아프리카=아이보리 코스트, 케냐, 튀니지아
 - ▲북미=미국
 - ▲중남미=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 ▲아시아=인도, 일본, 말레이지아.
 - ▲오세아니아= 호주
2. 질문서를 작성, 이들 나라의 저널리스트협회, 조합 등 모두 30 개 단체에 보냈으며 17 개 단체로부터 회답을 받았다.
3. 이들 나라에 있는 신문발행인협회에도 같은 질문서를 보냈다.
4. 전 2 항의 단체에 대해 이 문제와 관련 있는 자료들을 가급적 많이 보내주도록 의뢰했다.

5. 4 개국의 단체로부터는 조사일람표의 작성을 가능하게 할 정도의 회답밖에 보내오지 않았다. 그 이상의 정보는 개인적인 조사활동으로 입수했다.

6. 16 개국만이 회신을 보내왔다. 이 가운데 2 개국(이스라엘과 이집트)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한 저널리스트조합의 회답에만 의존하게 되었다. 추가정보의 입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주=동구제국으로부터 는 회답이 없었다)

7. 우리들이 받은 회답은 반드시 각국의 정확한 법적 또는 현실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회답은 그대로 받아들여 필요한 설명을 붙이기로 했다.

주된 발견

1. 호주, 프랑스, 영국, 인도는 부정적인 회답을 보내왔으나, 이 4 개국을 포함한 14 개국에서는 정보원을 보호하는 저널리스트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이들 나라 중 7 개국(오스트리아, 덴마크, 이집트, 서독, 영국, 스웨덴, 미국)만이 저널리스트의 정보원보호권을 전국적 혹은 지역적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그 외의 국가에서는 이 권리를 헌법에서 함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시행하는 방법을 상술함이 없이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스페인 헌법은 직업적 비밀을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다) 또 이 권리는 윤리강령(9 개국) 또는 신문발행인, 방송국경영자와의 협정으로 인정되고 있다.

저널리스트의 정보원 비익 권리가 적당한 법률에 의해 인정되지 않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당국이 정보원의 폭로를 구할 때에 비익권을 관철할 수단이 없으며 이 점은 극히 중요한 대목이다.

저널리스트가 법정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법률로 저널리스트에게 정보원을 숨기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만 가능하다(오스트리아, 덴마크, 이집트, 서독, 영국, 스웨덴, 미국). 이 가운데 5 개국(오스트리아, 덴마크, 이집트, 서독, 스웨덴)에서는 한발 더 나가 미디어의 사무실, 저널리스트 혹은 다른 종업원의 가택을 수색하여 서류를 입수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2. 호주에 있어서만 정보원을 보호하는 권리가 절대적이다. 법적 보호가 있는 그 밖의 나라들에서는 이 권리는 조건부다. 예외로는 국가비밀, 공공의 질서, 일정한 범죄, 개인적 이해의 우선, 법집행상의 필요, 다른 기본적 권리의 보호 등과 관련된 것이다.

3. 정보원을 보호하는 권리에 대해 법적 승인이 존재하지 않든가 혹은 그러한 권리가 사법당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법당국의 질문에 대한 회답을 거부하든가 법정에서의 증언을 거부하는 저널리스트는 벌금(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말레이시아, 페루, 스페인) 또는 금고형(호주, 덴마크, 미국, 인도,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페루, 스페인, 미국)을 언도 받는 일이 있다. 일본은 이 질문에 대해 회답하지 않았다.

4. 정보원의 강제적 폭로에 대한 전면적인 법적 보호가 없는 나라들에서는 사법부가 다른 수단(범죄협약에 의한 구류, 문서사취의 죄로 기소)을 사용하여 저널리스트에게 압력을 가하려고 한다. 이 같은 일은 7 개국(덴마크, 프랑스, 서독, 인도, 말레이시아, 페루,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으나, 표주, 오스트리아, 영국, 스웨덴, 이스라엘에서는 행해지지 않고 있다.

5. 5 개국의 저널리스트는 정보원 보호의 현상에 만족한다고 했다(오스트리아, 이집트, 이스라엘, 일본, 스웨덴). 이중 4 개국(일본이 제외됨)에는 정보원에 대해 일정한 법적 보호가 존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이집트, 스웨덴은(그리고 정도는 낮으나 미국도) 공중이 정보를 받을 권리와 공공의 질서가 충돌할 때에는, 사법당국은 일반적으로 전자를 우선시켜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6. 정보원 비익권을 보호하는 현상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11 개국 가운데 3 개국(덴마크, 서독, 미국)의 저널리스트는 현재의 법률 하에서 주어지고 있는 보호는 조건부이나 정보원 비익의 특권은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저널리스트조합의 대부분(14 개국)은 정보원의 법적 보호가 전국차원(13 개국)으로, 또는국제적 차원(14 개국)으로 승인되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인 조문화가 이루어질 때에는 정보원 보호의 권리는 무조건적(절대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6 개국 중 11 개국). 정보원의 보호에 관한 전국적인 법률은 필요없다고 말하는 3 개국의 저널리스트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이것은 직업윤리에 관한 문제이며 법률에 의해 규제해서는 안 된다. (호주, 영국)

▲법률에는 예외가 명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렇게 되면 법적 보호가 없는 경우보다 저널리스트의 상태는 나쁘게 된다(일본)

각국의 상황

■ 호주

저널리스트의 정보원 비익 권리는 법률도 법원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신문평의회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법률적인 뒷받침은 없다. 이 권리는 표주저널리스트협회의 윤리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신문사와 방송사에 의해 승인되고 있다. 사법당국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한다면가 비밀문서의 공개를 거절한 저널리스트는 법정모욕죄로 문책되는 일이 있다. 이 경우 벌금형(액수의 제한은 없다)이나 금고형(형기의 제한은 없다)에 처해진다.

언론법의 권위자인 호주 국립대학 조프리소야 교수는 저널리스트의 정보원 비익에 관한 칠주의 법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널리스트는 통상 정보원을 비밀로 하고 싶어한다. 일반적으로 저널리스트를 포함하여 일반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강요 당하는 경우는 하나뿐이다 즉, 그것은 법정, 국회의 위원회, 증언을 요구할 권한을 갖고 있는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의 경우이다. 명예훼손소송에 있어서 신문사의 사원은 때로는 편집자나 발행인이 책임을 지고 있는 명예훼손기사의 필자를 밝히는 것을 거부할 특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널리스트는 그 답변이 법정에 계류중인 사건을 해결하는데 필요하다고 한다면 비록 정보제공자의 신뢰를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증인석에서의 답변이 의무화되고 있다. 」

■ 오스트리아

직업상의 비밀(오스트리아에서는 편집상의 비밀로 불려지고 있다)은 60년 이상 법률로 지켜지고 있으며 특별한 보호조항으로서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저널리스트의 정보원의

비밀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지킬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름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는 필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1981년까지 유효했던 오스트리아 언론법은 기사게재 등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관한 소송사건을 통해 볼 때 저널리스트가 정보나 정보제공자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2년 1월 새 언론법이 시행되어 직업상의 비밀을 보호하는 범위가 넓어졌다. 저널리스트에게만 법정이나 행정처분에 있어 증거제출을 거부한다든가 필자나 정보제공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가 주어지고 있다.

이같은 권리는 소유자(발행인)나 편집인, 또는 언론사나 통신사에서 일하고 있는 저널리스트 이외의 전 종업원에게도 보장되고 있다. 직업상의 비밀은 정보 그 자체에도 적용된다. 새 언론법은 기사를 취급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언론사의 소유자, 발행인, 종업원에 대해서도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제공자나 정보를 알고 있음직한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해서 편집상의 비밀을 캐내는 일도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덴마크

덴마크에는 신문만이 책임을 지는 특별한 제도가 있다. 모욕죄에 대한 형벌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은 편집인이나 저널리스트에게 돌아간다. 편집인만이 이니셜이나 펜네임으로 쓴 것을 포함한 익명의 기사에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규정은 언론의 자유가 제정된 1984년 6월 5일의 헌법에 근거하여 1951년에 시행된 언론법에 삽입되고 있다.

정보원 비익에 대해서는 소송법 제 172조 제 1항에 덴마크에서 발행된 정기간행물의 편집인, 부편집인과 저널리스트는 그 간행물쪽의 익명기사의 필자가 누구인가를 증언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 제 2항에 의해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많이 한정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구류보다 더 무거운 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라든가 공무원의 비밀준수의무와 관계되는 소송, 또 사건해결을 위해 증언의 필요가 있는 소송에 있어서는 법원은 공적 및 사적인 이익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항(제 1항을 가리킴)에 규정되어 있는 인물(편집인, 부편집인, 저널리스트)에 대해 증언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라디오나 TV에서는 책임을 지는 제도가 다르다. 라디오국과 TV국의 편집인, 저널리스트는 법률상 정보원 비익 권리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 프랑스

법률도 법제도도 저널리스트에게 정보원을 공개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결정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많은 조항들이 이 권리의 장선이 될 규정을 정하고 있다. 형법 제 378조는 의료관계자나 「직업, 거래에 의해, 위탁된 비밀을 갖고 있는 자」에게 직업상의 비밀을 비익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 조항에는 변호사, 성직이자, 사회봉사자, 공증인이 포함되나 저널리스트는 제외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 56조, 제 62조, 제 96조는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극악범죄의 경우에는」 모든 서류, 문서, 그 밖의 물건을 압수하여 「사실 또는 입수한 물건이나 문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인물로부터 공술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 및 형사소송법에 의해 국민에게 증인으로서 답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법정에서의 증언거부는 1,200 프랑에서 3,000 프랑까지의 벌금이 과해진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된 저널리스트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고 쓴 것인지 또는 진실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때문에 저널리스트는 대부분의 경우 정보원을 밝히게 되며, 따라서 정보제공자가 밝혀지게 된다. 만일 증언을 거부하면 비록 발표된 정보가 정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동적으로 유죄가 된다.

■ 서독

1949년 이래 신문과 방송의 저널리스트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보원을 지킬 권리를 갖고 있다(바바리아지방 언론법). 민사사건인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저널리스트는 이 권리를 은연중 인정 받고 있다. 즉 저널리스트가 비밀을 밝혀야 할 입장에 처했을 때 증언의 거부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이것과는 모순되는 것 같은데 형사소송법에는 편집상의 비밀을 「지킨다」로 특기한 조항이 있으나 민사소송법에는 저널리스트를 명기한 조항이 없다.

함부르크지방의 언론법은 증언거부의 권리를 갖는 사람들에게 기탁된 문헌 또는 증거를 그들 자신 또는 그의 사무실로부터 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법이 연방법(이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 53 조)과 상반되어도 되느냐는 문제점이 있다.

서독연방의회는 1975년에 형사소송법 제 53 조를 수정, 언론과 라디오 관계자의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다음과 같이 제한했다. 「다음의 사람들은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인정된다……정기 간행물 또는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의 준비, 제작, 전달에 직업적으로 기여하거나 기여했던 사람들. 증언이 거부될 수 있는 내용은 기사나 문헌을 제공한 필자, 발행인, 기자, 정보원은 누구든지 자신들의 직업의 성질상 입수한 정보, 단 이러한 기사, 문헌, 정보는 편집국용이 아니면 안 된다」.

■ 영국과 아일랜드

전국저널리스트조합의 행동강령은 「저널리스트는 정보원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익권은 법률상 부분적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정보원 비익권에 관한 중심적인 조항은 1981년의 법정해육법 제 10 조다. 동법은 「정의, 국가의 안전보장, 미풍양속의 유지, 범죄의 방지를 위해 법원이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가 없으며 어느 누구도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는 출판물에 게재된 정보원의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법정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원비익권이 설정되어 있긴 하지만 만일 그 정보가 제 10 조에 규정되어 있는 네가지 목적중의 어느 한가지에라도 해당한다면 비익권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술적으로 말해서 제 10 조는 법정에서의 증언요청에 적용된다.

경찰의 수사와 압수에 관해서는 경찰 및 범죄 증거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률은 당초 중요범죄에 관한 증거수집을 위해 강력한 포사권을 경찰에 허용하고 있었으나 의사나

성직자, 저널리스트단체의 저항에 의해 「저널리스트의 자료」의 압수를 한층 어렵게 하도록 수정되었다. 저널리스트의 자료는 다음과 같은 3개의 범주로 분류되어 있다.

1. 「비밀로 한다는 약속하에 입수한 문서나 그 밖의 기록」으로 된 저널리스트의 자료는 경찰에 압수되지 않는다.

2.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자료비밀리에 입수되지 않은 저널리스트의 자료는 수사 또는 압수된다. 그러나 경찰은 특별한 영장을 필요로 한다 판사는 중요한 범죄수사를 위해 자료압수가 적절하며 경찰에게 자료압수를 인정해 주는 것이 민의에 따르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언론사는 압수에 대항하여 다룰 권리가 있다.

3. 저널리스트가 아닌 자료는 통상의 방법에 의하여 압수된다. 경찰은 영장을 필요로 하나 판사는 「공공의 이익」을 해아릴 의무는 없다. 또한 언론매체는 반항할 권리를 갖지 못 한다. 저널리스트의 자료란 「저널리즘을 목적으로 입수한다든가 작성된 자료로서 저널리즘의 목적을 위해 그것을 입수 또는 작성 한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 인도

저널리스트의 정보원 비익은 법률에 의해서도, 법제도에 의해서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저널리스트는 비밀로 입수한 정보를 비익할 권리를 법정에서 요구할 수 없다.

■ 이탈리아

정보원 비익은 법제도하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저널리스트의 질서」를 규정한 법령 3, 2, 63 속에 기술되어 있다. 법령 3, 2, 63의 제 2 조는 다음과 같다

「저널리스트나 편집인은 정보원이 비익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지킬 의무가 있으며 동료와 공동으로, 저널리스트와 편집인이 협력하여, 독자와 언론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정신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조항은 명백하게 직업상의 비밀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 규정이 순수한 윤리적인 것이며 다른 법률(특히 형사소송법 제 35 조)로부터 저널리스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형소법 제 35 조는 법에 규정되고 있는 한정된 사람들(성직자, 변호사, 검사관, 기술적 조언자, 공증인, 의사 및 의료전문가)에 대해 그들이 입수한 비밀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관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실제적으로는 법원의 해석에 따라, 비밀의 정보원에 관해 법정에서의 증언을 요구 받는 저널리스트가 이를 거부한 경우 형법 제 372 조의 증언거부죄로 구형 받을 수 있으며 6개월로부터 3년까지의 금고형에 처해질 위험이 있다.

■ 말레이시아

정보원 비익은 법률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법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인쇄기 · 출판법(1984년)은 인쇄기 사용허가 수속과 신문발행허가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소관각료의 허가 없이 신문을 「인쇄, 수입, 발행, 판매, 배포하는 것은 위법」이며 소관 각료는 「전적으로 자유재량권에 의해」 허가하고 취소하고 유보할 수 있다. 또 이

법률은 경찰관이 동법위반이자 또는 동법위반을 의심해도 당연한 자를 영상없이 체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제 20 조). 경찰관은 또 동법 위반행위의 증거가 된다고 믿는 이유가 있는 인쇄기나 출판물, 그 밖의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국가비밀법(1972년)은 위반자에 대해 최고 7년의 금고형 또는 최고 1만 달러의 벌금형을 정하고 있다.

전국저널리스트동맹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비밀로 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밀은 공개된 통치체제를 유지, 촉진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저널리스트들이 만일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면 법정모욕죄로 피소되어 체형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자신의 변호를 위해 정보원의 비익을 내세울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스페인

1987년의 스페인헌법 제 20 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 1 항은 직업상의 비밀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동항은 모든 언론매체를 통해 자유로이 진실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하고 있다. 또 「법률에 의해 양심조항과 직업상의 비밀을 지킬 권리를 규정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 20 조의 규정을 보강하는 기본적인 법률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 사전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널리스트의 정보원 비익 권리는 사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저널리스트는 사법적 조사단계에서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수 있으나 법원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만일 판사로부터 정보원을 공개하도록 명령 받았을 때에는 저널리스트는 법률적으로는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거부하면 처음에는 벌금을 물도록하고 거부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금고형의 처벌을 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

■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1766년에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현재의 언론자유법은 1949년에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동법 제 3 장은 「익명의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인쇄물의 제작이나 발행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통신사와 같이 정기간행물에 정보제가의 활동을 하는 회사의 모든 종업원에 대해 정보원이 되었던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법률은 이와 같이 정보원의 비익을 저널리스트의 권리로서가 아니라 정보제공자의 권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묵비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

헌법 제 3 장은 집필된 정보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1967년에는 라디오와 TV를 위해 이와 같은 조항이 별도의 조항으로 채택되었다. 이 묵비의 의무의 예외는 법률로 규정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경우이다. 즉, 정보제공자가 익명권을 포기할 경우, 증인(저널리스트)이 선서를 하고 조사를 받는 일이 일반의 이익 또는 개인의 이익이

된다고 법원이 판단했을 경우. 게재된(혹은 게재예정인) 정보가 국가와 안전보장을 해칠 명확한 범죄(반역죄, 스파이행위 등)를 폭로하는 경우.

이러한 예외를 보면 스웨덴에 있어서의 정보원 보호가 다른 서방국가를 보다 본질적으로 잘되어있는 것만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스웨덴의 법원이 저널리스트에게 정보원에 관해 질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한다. 저널리스트들은 이상과 같은 형태로 정보원의 보호가 보장되고 있는 데 대해 만족하고 있다.

■ 미국

저널리스트의 특권은 행정, 입법, 사법당국에 대해 정보원을 밝히지 않는 권리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 자체를 밝히지 않는 권리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누구에게나 증언을 의무화시키고 있다. 관습법 하에서 증언에 관한 특권을 부여 받고 있는 의사, 변호사, 성직이자, 배우자는 예외이다. 관습법에서 저널리스트는 이러한 특권이 없다.

그러나 저널리스트는 과거 오랫동안 이러한 특권을 인정해주도록 요구해 왔다. 19세기말에 이러한 사고방식이 처음으로 발달하였으며, 오늘날 정보원비익보호법으로 알려지고 있는 주법을 통해 기자의 특권을 보장하는 아이디어가 생겨났다. 메릴랜드주가 1896년에 처음으로 정보원비익보호법을 가결한 이래 26개주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언론을 보호하는 법을 가결해 왔다.

그러나 그 효력은 불확실했다. 관습법에서는 저널리스트의 특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몇몇의 법원은 이 보호법이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보도기관의 대다수는 1주 이상과의 접촉을 가지기 때문에 저널리스트가 어떠한 1주의 보호법에 의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실제적으로 기자가, 증가하는 소환장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정도는 주법의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론과 주의회에 대한 법원의 자세에 의해 결정된다.

수정헌법 제 1 조에 근거한 요구(언론의 자유에서 출발하는 언론의 정보원비익의 요구)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교형량을 실시한다.

- ▲ 그 정보가 사건과 관계되어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인지의 여부.
- ▲ 그 정보가 「문제의 핵심」에 닿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
- ▲ 언론매체를 통하지 않고 그 정보를 입수하는 다른 방법을 다했는가의 여부.
- ▲ 정보가 제출되지 않으면 오심을 초래하는가의 여부.

1972년에 연방대법원은 세가지의 사건을 통합하여 판결을 내렸다.

그 사건들은 저널리스트를 주 또는 나라의 대배심에 소환하여 증언을 구하는 일이 수정헌법 제 1 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과 언론의 자유를 뺏는 결과가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들이었다. 대법원은 5대 4로, 그것은 언론과 언론의 자유를 뺏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브란즈버그 대 헤이즈판결) 화이트판사가 쓴 다수의견은 저널리스트가 대배심의 요구에 응해 출두하여 형사재판의 질문에 답하는 것을 수정헌법 제 1 조는 면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파우엘판사는 다수의견에 동의하면서도 다수의견의 날카로운 기세를 부드럽게 하는 의견을 내세웠다. 그는 저널리스트를 박해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증언할 의무와의 균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정할 수가 있다고 시준 했다. 이에 대해 두 종류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더글라스판사는, 저널리스트는 수정헌법 제 1 조 아래에서 대배심에 출두하여 증언하는 것을 거부할 절대적인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브레난과 마샬 두 판사는 스튜워드판사가 쓴 반대의견을 지지했다. 동판사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조건부특권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①저널리스트는 정보수집을 위해 정보제공자를 필요로 한다. ②정보제공자와 정보수수의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보원 비익이 불가결하다. ③소환이 억제되지 않으면 기자가 정보를 입수하여 공표하는 것이 어려워 진다.

하급법원은 이에 의해 기자의 특권문제를 취급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판결을 얻은 셈인데, 그 후의 하급법원의 판결은 브란즈버그판결에서 나타난 네가지의 상이한 의견을 방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하고도 정확한 회답은 없다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저널리스트들은 법률로 충분히 보호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미국에서의 정보원보호의 존재상태에 대해 만족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법적인 보호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인정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법전화 될 경우에는 정보원을 보호하는 권리는 절대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일본

취재원 비익권은 법적으로는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민법에서는 이를 인정한 판예가 있다. 또 법적인 측면과는 별도로 취재원 비익은 언론계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관습이며 윤리이다.

형사소송법은 업무와 관련하여 얻은 비밀에 대한 증언을 거절할 수 있는 직업을 열거하고 있다. 동법 제 149 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권)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들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상 위증을 받음으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승락한 경우, 증언의 거부가 피고인만을 위해서 하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피고인이 본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기타 재판의 규칙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자는 동조에 열거된 직업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최고재판소는 1952년 8월 6일 형사재판(석정 기자 취재원 증언거부 사건)에서 「제 149 조는 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민사에서는 민사소송법 제 281 조(증언거절)에 「① 약, ②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부, 변호사, 변리사, 변호인, 공증인, 종교 또는 수사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들 직에 있었던 자가 직무상 지득한 사실로서 묵비해야만 할 사항에 대해 범문을 받을 때 ③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범문을 받았을 때는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민사에서도 형사소송법과 동일하게 기자는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증언거부를 사실상 인정한 판례가 있다. 「삿쁘로 시내의 보육원에서 보모에 의한 징계사건이 있었다」고 보도한 북해도신문사를 상대로 한 보모가 제기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북해도신문사의 도전영중 기자가 피고측의 증인으로 출정하여 취재원인 보육원의 종업원의 이름을 밝히는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삿쁘로 지방재판소는 1979년 5월 「신문기자의 취재원은 민사소송법 281조 3항에서 말하는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며 증언거절은 그것에 의해 다른 한쪽 당사자의 입증의 길을 막아 극히 불공평한 재판을 초래하지 않는 한 인정된다」고 법적으로는 처음으로 신문기자의 취재원 증언거부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 삿쁘로 고등재판소도 1979년 8월 「취재원에 대한 증언거부는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공정한 재판의 실현과의 관련에서 제약을 받으나 그 제약을 공정한 재판의 실현이라는 이익과 취재원 비익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의 비교형량으로 결정해야만 한다」고 판시했다. 원고측은 특별항고 했으나 최고재판소는 이를 각하하여 삿쁘로지방법판소, 고등재판소의 결정대로 확정되었다.

언론계에서는 대부분의 발행인, 편집인이 정보원의 비익에 대해 현재와 같이 윤리적 측면으로 인식되고 처리되는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이를 법률에 명기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은 적은 편이다.

결론

저널리스트에게 그의 정보원을 보호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에 대해 결론을 도출해내는 일은 이 문제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라는, 엄청나게 큰 문제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다.

저널리스트에게 정보원을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이들 정보원 또는 다른 잠재적 정보원을 고갈시키는 것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법률적으로도 인정되고 있다. 정보원의 비밀성이 보장되지 않아 정보가 숨겨진다고 한다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일반대중이다.

저널리스트의 비밀정보원의 보호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나라의 언론매체에 대해 장기적인 예측을 해보면 그러한 나라에서는 언론매체는 「공인의」 정보에 한정되어 지배층의 「대변이자」가 되든가 아니면 「대변이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일반대중과 언론매체의 정보원은 그렇게 보게 될 것이다.

출판의 자유를 받아들이지 않든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제한을 붙여 「자유」를 가공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는 나라에서는 저널리스트의 비밀정보원을 보호하는 일은 중요한 우선 사항이 될 수 없다. 그 당시의 정부의 의문에 맞지 않을지도 모를 사항에 관해 일반대중이 이를 알 권리가 문제인 것이다.

조사는 「정보의 자유」가 「마음의 상태」에 있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어떠한 유형과 입법, 즉 「국가비밀법」형 입법이라든가 「정보의 자유법」형 입법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정부나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세력의 「마음의 상태」가 일반대중의 알 권리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한다면 대중의 입장에 보면 결과는 같다고 하겠다.

적절한 예외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정보접근 「전면금지」의 방향으로 입법화를 추진하든, 아니면 적절한 예외가 정해지지 않은 채 정보접근 「전이면허가」의 방향으로 입법화를 추진하든, 아니면 적절한 예외가 정해지지 않은 채 정보접근 「전면허가」의 방향으로 입법화가 추진되든 결국 저널리스트의 권리 그리고 일반대중의 권리는 그 나라가 사람들의 알 권리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에 달려있다.

조사한 몇몇 나라에는 정보원비익보호법이 존재하는데 그 존재는 일반대중의 정보에의 접근을 지지하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조사한 대부분의 나라에는 정보원비익보호법의 보호가 없으며 사법당국의 정책은 일반대중의 알 권리와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마음의 상태」는 법원이 안전보장, 사법상의 이익 혹은 「공공의 이익」(개인의 이익으로부터 당국의 이익에 이르기까지) 등의 이른바 경합하는 제원칙과 정보의 자유라는 원칙의 경중을 장시간에 걸쳐 「계양」한 사건의 경우에 더욱더 명백해진다.

다른 케이스에서는 알 권리에 의한 일반대중의 이익과 시민의 사적인 이익과의 사이에 이해의 충돌이 보였다(예를 들면 명예훼손 · 중상사건).

이번 조사에 회답을 보내온 저널리스트조합의 대부분은 법령에 정해진 강제력이 있는 정보원비익 보호법조항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법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의회가 보호에 및 불인 「예외」가 지나치게 많아 실제적으로 양심적인 저널리스트의 보호에는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저널리스트는 그 직업의 성질상 사법당국과 접촉한다. 그러나 저널리스트는 경찰관은 아니다.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경찰관의 임무를 돕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적어도 형사사건에서는 저널리스트에게 비밀정보의 공표를 강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강하게 반론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정보공표는 경찰관의 일을 돕는다는 공리적인 성격밖에 갖지 못한다.

명예훼손사건과 같은 민사사건에서는 조사를 행한 모든 나라의 저널리스트들이 정보원 비익하기 위해 생기는 결과를 감수 할 것이라는 것을 시준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들의 전통적인 윤리적 근거에 따라 취하는 입장이라고 하겠다. 마음에 들지 않는 정보를 기사화하는 저널리스트를 「비밀문서의 절도」로 취급하는 「마음의 상태」는 일반대중이 알 권리를 갖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이다. 정보원을 공개하지 않는 저널리스트에 대한 형벌을 허용하는 「마음의 상태」도 그와 같은 「마음의 상태」인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정보원 비익 보호법은 결코 만능약이 아니다. 해결책은 사회를 구성하는 각계각층의 「마음의 상태」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번 조사는 또한 정보원 비익 보호법 그 자체가 저널리스트와 일반대중을 보호하는데 불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 법은 저널리스트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하고 준비한 문서를 수색, 압수하는 권리를 금지하는 것에 의해 보강되지 않으면 안 된다.